

대법원판례 해설

- “매직블럭” 상표 사건 -

1. 사건의 표시

2013후2446 권리범위확인(상) 대법원 2013.12.12. 선고

2. 판결이유의 요지

- (1) 확인대상 표장 “매직블럭 매직폼”의 구성 중 ‘매직블럭’ 부분은 ‘세척용 스펀지’에 관하여 관용표장에 해당한다.
- (2) ‘매직블럭’ 부분이 관용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시를 기준으로 한다.
- (3) 따라서 ‘매직블럭’ 부분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관용표장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표장 “매직블럭 매직폼”은 ‘기름때를 제거하는 연마스펀지’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 “매직블럭”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.

3. 판례 해설

- (1) 확인대상 표장 “매직블럭 매직폼”과 이 사건 등록상표 “매직블럭”은 ‘매직블럭’ 부분에서 동일, 유사하지만 ‘매직블럭’ 부분은 이 사건 심결시 기준으로 ‘세척용 스펀지’에 관하여 관용표장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.
- (2) 여기서 관용표장이라 함은 어떤 표장이 특정상품에 대하여 동업계에서 다년간 계속적, 관습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사후적으로 식별력을 상실한 표장을 말합니다(예 : 강-스넥과자, 은단-구중청량제).
- (3) 이 사건의 쟁점은 양자 표장의 공통된 “매직블럭”부분이 심결시 기준으로 관용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인 바, 대법원은 “매직블럭” 부분이 관용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.
- (4) 그렇다면, 참고로 이 사건 등록상표 “매직블럭”은 관용표장에 해당하여 등록무효사유가 있고, 설사 등록시에는 식별력을 갖추어 유효하게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의 심결시에는 관용표장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적어도 후발적 무효사유에 해당함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.